

마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에 의거 복지동행국장 전결을 확인함

문서번호	어르신동행과-6756
문서공개	대국민 공개
결재일자	2026. 2. 24.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동행과장	복지동행국장
배연주	한정희	권윤영	2026. 2. 24. 김경숙
협조			

새로운 마포 더좋은 마포

2026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

2026. 2.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2026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3153-8860 어르신정책팀장: 한정희 ☎8851 담당: 배연주 ☎8857

거동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영양을 보장하는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 2026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운영계획(서울시 어르신복지과-1143(2026. 1. 19.))

☐ 추진경과

- '91. ~ : 무료급식 지원(~'01년 : 노인복지기금, '02년~ : 일반회계)
- '00. 4월 : 도시락 및 밀반찬 배달사업 시작(보건복지부)
- '05. ~ :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밀반찬 배달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

II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업목적 : 거동불편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영양을 보장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1,590명

- 사업예산 : 2,382백만원(시비 2,024백만원, 구비 358백만원)
- 수행기관 : 사회복지시설 등 12개소
- 사업내용 : 급식비, 인건비, 운영비 및 인력지원

III 2025년 추진실적

- 2025년 저소득 어르신 경로식당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수행기관 :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9개소
 - 사업내용 : 경로식당 급식비, 인건비 및 인력지원
 - 이용대상 : 1,400명
 - ※ 2025년 이용인원(등록인원+종결자) 누계 기준
 - 집행률 : 94.06%(집행액 1,789,826천원)
- 2025년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식사배달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수행기관 : 사회복지시설 9개소
 - 사업내용 : 급식비
 - 이용대상 : 도시락 257명, 밀발찬 352명
 - ※ 2025년 이용인원(등록인원+종결자) 누계 기준
 - 집행률 : 92.00%(집행액 478,282천원)

IV 2026년 추진계획

- 정책환경 변화
 - 인구 고령화 및 독거노인 증가로 결식우려 어르신 비례적 증가 전망
 - 고령화 가속에 따른 어르신의 건강 유지·개선을 위한 건강 관리 필요성 증가

□ 추진방향

- 결식 우려 있는 저소득 어르신의 기본적인 영양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건강형 식사 지원사업을 통한 어르신의 건강상태 개선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 지속
- 급식지원대상자 안부확인 철저 및 관리 절차 준수

□ 2026년 사업계획 현황

연 번	기 관 명	2026년 목표현황(배정인원)						인력 지원 현황		
		경로 식당	방식	배 달 사 업				영양사 지원	조리 보조원	운영비 지원
				도시락	방식	밀반찬	방식			
1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255	직접조리	45	직접조리	-	-	정규직	1	○
2	우리마포복지관	230	직접조리	-	-	-	-	정규직	-	○
3	용강노인복지관	120	직접조리	-	-	20	직접조리	○	-	○
4	성산종합사회복지관	150	직접조리	84	위탁조리	40	위탁조리	○	○ 조리사	○
5	사랑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50	직접조리	20	위탁조리	25	위탁조리	정규직	-	-
6	염리종합사회복지관	59	직접조리	-	-	-	-	○	-	-
7	아현실버복지관	68	직접조리	-	-	15	직접조리	○	-	○
8	아현노인복지센터	120	직접조리	23	직접조리	-	-	○	-	○
9	(사)해돋는마을	58	직접조리	-	-	-	-	○	-	-
10	마포서부재가노인복지기관 (구)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	-	33	위탁조리	65	위탁조리	-	-	-
11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구)마포노인복지센터	-	-	-	-	45	위탁조리	-	-	-
12	마포보사재가노인복지기관 (구)보사노인복지센터	-	-	-	-	65	위탁조리	-	-	-
계		1,110		205		275				

※ 배정인원을 초과하여 급식 제공 불가

< '26년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2026년	2025년	비 고
수행기관		12개소	12개소	
급식비 지 원	대상	총 1,590명 - 경로식당: 1,110명 - 도시락배달: 205명 - 밀반찬배달: 275명	총 1,642명 - 경로식당: 1,136명 - 도시락배달: 207명 - 밀반찬배달: 299명	서울시 배정인원 기준
	단가	- 경로식당: 4,500원 - 도시락배달: 4,500원 - 밀반찬배달: 5,000원	- 경로식당: 4,500원 - 도시락배달: 4,500원 - 밀반찬배달: 5,000원	
종사자 인 건비 지 원	대상	- 영양사: 6명 - 조리사: 1명 - 조리보조원: 1명 - 사무보조원: 1명	- 영양사: 6명 - 조리사: 1명 - 조리보조원: 1명 - 사무보조원: 1명	
	단가	- 영양사: 2,574,740원 - 조리사: 2,550,400원 - 조리보조원: 2,381,210원 - 사무보조원: 5,500,000(분기)	- 영양사: 2,481,940원 - 조리사: 2,460,700원 - 조리보조원: 2,304,220원 - 사무보조원: 5,500,000원	-영양사 및 조리사 ·시비 60%, 구비 40% -조리보조원 ·시비 100%
경로식당 운영비 지 원	대상	- 6개소	- 6개소	급식지원대상자 60인 이상 수행기관
	단가	- 1개소당 당 2백만원	- 1개소 당 2백만원	
건강형 식사지원		- 45명	- 45명	

① 수행기관 지정 · 운영

☐ 수행기관 :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 12개소

☐ 주요역할

- 수행기관에서 자체조리를 권장하며, 위탁방식은 가급적 배제
- 폭염, 폭설, 전염병 유행 등 위기상황 시 식사제공 철저
- 급식지원 대상자 적격여부·중복여부 확인 및 급식대상자 안부·동향보고 철저

② 급식비 지원

- 사업내용 :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밀반찬배달 급식비 예산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590명

○ 기본급식 지원 대상 및 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인원 ('26년 배정 인원)	기본급식비(1식)
계	-	1,590명	
경로식당(9개소)	만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110명	4,500원(주 6회)
도시락배달(5개소)	만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205명	4,500원(주 7회)
밀반찬배달(6개소)	만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중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275명	5,000원(주 2회)

○ 추가급식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특 식 비	경로식당, 도시락, 밀반찬 배달	연 7회 특식 제공 (단가 4,500원)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동절기 추가지원 (1, 2, 12월)	거동불편 등 동절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도시락배달(1식→2식)	변동가능

○ [참고] 연도별 급식단가 조정 내역

구 분	1차조정 (‘05년 이전)	3차조정 (‘08년)	5차조정 (‘12년)	7차조정 (‘18년)	9차조정 (‘22년~)	10차조정 (‘23년~)	11차조정 (‘25년~)
경로식당	1,520원	2,500원	2,800원	3,500원	4,000원	4,000원	4,500원
도시락배달	2,000원	2,500원	2,800원	3,500원	4,000원	4,000원	4,500원
밀반찬배달	2,500원	3,000원	3,500원	3,600원	4,000원	4,500원	5,000원

③ 인건비 지원

☐ 사업내용 : 수행기관이 고용한 영양사조리사조리보조원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구 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력
영양사	경로식당(무료) 급식인원 50명 이상 ※ 기존에 있는 시설은 미지원	월2,574,740원 시비(60%)-1,644,844원 구비(40%)-1,029,896원	6명 우리마포복지관, 용강노인복지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아현실버복지관, 해돋는마을, 아현노인복지관
조리사	경로식당(무료) 급식인원 50명 이상 + 총 무료급식인원 200명 이상	월2,550,400원 시비(60%)-1,530,240원 구비(40%)-1,020,160원	1명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조리보조원	경로식당(무료) 급식인원 50명 이상 + 총 무료급식인원 300명 이상	월2,381,210원 (시비 100%)	1명 시립마포종합사회복지관
사무보조	운영이 열악한 소규모 운영기관 정액보조	구비 100%	1명 아현노인복지센터

※ 단, 영양사, 조리사는 인건비가 기관 정원에 포함되어 보조금이 지원되는 기관은 제외

※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성산종합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구비 100% 지원

(변경 전) 직영급식인원 + 위탁급식인원 → (변경후) 직영급식인원

④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 사업내용 : 급식지원 대상자 60인 이상 경로식당에 운영비 연간
2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6개소

☐ 사업예산 : 12,000천원(시비 100%)

⑤ 급식보조인력 지원(50+가치동행일자리 연계)

☐ 사업내용 : 가치동행단(서부,중부,남부,동부권) 어르신 급식지원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서울시50+재단을 통해 모집·교육하여 급식보조인력 지원
- 지원기간 : 2026. 3월 ~ 12월(예정)
- 지원대상 : 경로식당 50인 이상, 도시락·밑반찬 배달 30명 이상 수행기관
- 업무내용
 - 식재료 전처리, 조리보조, 포장, 설거지 등
 - 도시락·밑반찬 포장 및 배달, 용기회수 등
 - 실태조사, 모니터링, 사후평가 등 행정업무지원(건강형 식사지원사업)

⑥ 건강형 식사지원

□ 추진목적 : 결식우려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와 맞춤형 식사지원을 함으로써 어르신의 심리적·정서적 자원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저소득 어르신 도시락배달 대상자 중 각종 질환으로 지속적인 식사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건강 맞춤형 식단 제공
- 급식단가 : 5,500원(기존 도시락배달 단가 4,500원 + 추가지원 1,000원)
- 수행기관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V 세부 추진 계획

① 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으로 실제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어르신 중 실제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이 없는 자(기초생활수급 어르신)

- 3순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어르신 중 실제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이 없는 자(차상위 어르신)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결식 우려 어르신

< 도시락 및 밀반찬 배달지원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추진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경우 도시락(밀반찬) 배달 대상으로 우선 선정(식사지원 서비스 이용자 제외)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거동 불편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발굴하여 도시락(밀반찬) 배달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적극 연계
- 필요시에는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락배달 대상 어르신의 건강관리 강화

※ 2026년도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32%)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의료(40%)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342만 2,381
주거(48%)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410만 6,857
교육(50%)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24만 7,369	377만 8,360	427만 7,976

□ 급식대상자 관리

- 수행기관별 급식인원은 실제 1일 이용 급식 예상인원을 반영하여 110%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110% 범위를 초과하여 선정 가능
- 사업 수행기관의 1일 급식 대상자가 100% 이용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치구는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효율화 도모
- 관내 타 수행기관 및 구 자체 사업인 효도밥상 이용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수행기관별 급식대상자 명부 작성·관리 및 안부확인 철저
- 수행기관에서 신규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정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관할 자치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지원

-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업간 변경(예 : 경로식당→도시락배달)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자치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 및 지원)
- 어르신 급식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에서 급식지원 원칙
 - 다만, 독거어르신의 급식 수행기관 거리상 안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 외 경로식당을 이용 시 예외 인정
 - 이 경우 대상자 주소지 관할 자치구는 이용을 원하는 경로식당 관할 자치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지원 가능

②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관리

□ 수행기관 선정

- 사업신청 :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붙임 1> 사업등록신청서 제출
- 선정 시 준수사항
 - ① 사업의 지속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대상기관 우선순위 준수
 - 경로식당 : 노인종합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 비영리법인(단체) 順
 - 도시락·밀반찬배달 : 노인종합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 비영리법인(단체) > 사회적경제기업 順
 - ※ 도시락·밀반찬 배달은 대체식 납품 및 배달인력 확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도 선정 가능토록 개선(2019년)
 - ②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영양사, 조리사, 행정인력 등) 및 물적(조리시설, 보유 자본 등) 자원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현장 사전답사(붙임 2)를 통해 확인 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야 함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 수행기관(경로식당만 해당)을 신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집단급식소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붙임 2 관계법령>, 종사자 미확보로 집단급식소 신고가 어려운 단체는 신규지정 불허
 - 특히, 종사자(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 대상기관(사회복지시설)을 급식 수행기관으로 신규지정 하고자 할 경우 의무고용 종사자 확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를 신규 지정

- 기타 옥외 및 노상에서 급식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락 제조업체와 연계된 운영단체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수가 어려운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 제외

□ **수행기관 운영관리**

○ **수행기관 지도점검 : 상·하반기 연 2회**

- 운영지침 준수여부 등을 서울시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자치구별로 자체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4> 서식에 의거 결과 보고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현황, 급식 운영관리, 위생실태, 대상자 적정여부 등

○ **급식수행기관 등록관리 및 종사자 교육**

- 자치구는 등록한 급식기관 현황을 등록 대장에 의거 관리
- 급식기관 종사자에 대한 운영지침 등 교육 정기적으로 실시

○ **어르신 급식지원 대상자 중복 및 타 유사 급식* 이용 여부 등 수시 점검**

○ **급식 기관별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시 어르신 안부 확인 병행 실시**

-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시 안부확인 병행 및 활동일지 <붙임6>에 기록하고 전산시스템 입력, 이상 징후 발견 시에는 市·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 안부확인 시 특이사항은 주별로 수합하여 월별 실적 제출 시 시로 통보

○ **급식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 1회 실시**

- 자치구별 실정에 맞도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제작하여 연 1회 조사
-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하위 급식기관은 불만족 사유 시정조치

○ **급식 위탁조리는 자체 조리로 전환 유도**

- 위탁방식에 의하고 있는 급식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조리방식으로 전환 유도
- 급식공간이 미확보된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위탁이 가능하며, 자치구에서는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강화하여 급식의 질 확보

○ **수행기관 사업별 식단표 확인 및 시정조치**

- 수행기관 사업별 식단 확인 및 급식의 질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

③ 보조금 집행 및 운영관리

□ 보조금 집행기준

- 기본 급식비 보조금(특식비, 동절기 추가지원 보조금 제외)은 주·부식 등 직접적인 식자재 구입비로 93% 이상 사용 원칙
-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경로식당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식자재 구입비의 운영비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3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타사업에 대한 검증비 포함 불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검증비를 경로식당 운영비에서 사용 가능
- 영양사·조리사·조리보조원 인건비는 “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기본급)”을 적용하되, 근로시간은 수행기관별 급식제공 규모(직영급식 운영 기준) 등에 따라 항목별 1인당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조정(최대 150시간)
※ 노인복지관 등 영양사·조리사 인건비가 기관 정원에 포함되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기관은 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급식배달 용기 관리

- 1회용 용기 사용보다 배달용기 구입하여 사용 권장
- 도시락배달 용기는 더운 음식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고 식기 세척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VI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 자치구별 확정된 급식인원에 맞춰 분기별 교부
- 폭염, 폭설, 전염병 유행 등 결식이 우려되는 상황 시 식사 제공 철저
 - 폭염·폭설로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여 결식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 도시락 · 밑반찬배달 사업수행 기관에서는 배달인력 결원으로 인해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배달인력 확보 철저

☐ 월별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제출 철저(월별)

- 월별 보조금 집행액 및 급식 지원대상자 현황, 식단표, 특이사항 등 제출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제출

- 붙임 1.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1부.
2. 급식 수행기관 현장 확인 보고서 1부.
3. 급식 수행기관 집단급식소 신고관련 법령 1부.
4.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5.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점검표 1부.
6.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거점회의 서식 1부.
7.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활동일지 1부.
8.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식단표 및 안부확인 특이사항 제출 서식 1부.
9. 2026년 각 사업별 기준 중위소득 현황 1부.
10. 2026년 영양사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 산출 기준 예시 1부. 끝.